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1호

임실군의회 김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9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 조형물을 설치 및 보호·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다.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5년 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실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임실군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군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임실군의회 김정흠의원

관련법령

□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기념사업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 ①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국적 회복 등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개인·법인·단체의 요건과 경비보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여의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과 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